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 (행정안전부 소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 소속기관에 경찰서를 신설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44명(총경 1명, 경정 8, 경감 15, 경위 7, 경사 4, 경장 3, 순경 2, 6급 1, 7급 1, 8급 1, 9급 1)을 증원하는 한편, 경기도남부경찰청 산하 수원중부경찰서를 수원장안경찰서로, 수원남부경찰서를 수원영통경찰서로, 수원서부경찰서를 수원권선경찰서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42조제1항 중 “259개”를 “261개”로 한다.

제64조제2항 후단 중 “629명을”을 “630명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523명”을 “525명”으로 한다.

별표 2의 부산광역시 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중 “부산기장경찰서”를 “부산기장경찰서, 부산수영경찰서”로 하고, 같은 표 경기도남부 경찰청의 경찰서명란 중 “수원중부경찰서, 수원남부경찰서, 수원서부경찰서”를 “수원장안경찰서, 수원영통경찰서, 수원권선경찰서, 수원팔달경찰서”로 한다.

별표 3의 경기도남부경찰청의 경찰서 명칭 중 “수원남부경찰서”를 “수원영통경찰서”로 한다.

별표 5 중 총계 “134,216”을 “134,260”으로, 경찰공무원 계 “129,778”을 “129,818”로, 총경 이하 “129,677”을 “129,717”로, 일반직 계 “4,344”를 “4,348”로, 4급 또는 총경 이하 “4,323”을 “4,327”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5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경찰서) ① 시·도경찰청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시·도경찰청장 소속으로 <u>259개</u> 경찰서의 범위에서 경찰서를 두며, 경찰서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제42조(경찰서) ① ----- ----- ----- <u>26</u> <u>1개</u> -----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생 략)	제64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총경의 정원은 <u>629명</u> 을, 4급 공무원의 정원은 15명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② ----- ----- -----. ----- <u>630명</u> 을----- ----- ----- ----- -----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총경의 정원 중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경찰청의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	③ ----- ----- ----- ----- -----

및 보좌기관의 정원과 경찰서장 의 정원의 합은 <u>523명</u>을 그 상 한으로 한다. ④ ~ ⑥ (생 략)	----- ----- <u>525명</u>----- -----. ④ ~ ⑥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5]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6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134,216</u>	<u>134,260</u>	+44
경찰공무원 계	<u>129,778</u>	<u>129,818</u>	+40
·	·	·	
·	·	·	
총경 이하	<u>129,677</u>	<u>129,717</u>	+40
·	·	·	
·	·	·	
일반직 계	<u>4,344</u>	<u>4,348</u>	+4
·	·	·	
·	·	·	
4급 또는 총경 이하	<u>4,323</u>	<u>4,327</u>	+4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안전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82